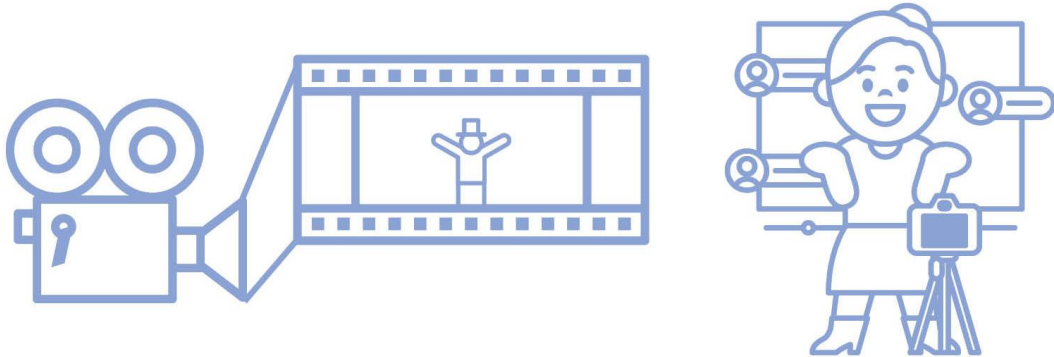


5-2.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



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



지원 대상

- 아래 요건을 갖춘 영상제작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(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,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,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및 영화, 등급분류를 받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¹⁹⁴)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(광고나 홍보비용 제외)

<지원 대상 영상제작자 요건>

다음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자

- 작가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
-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
- 주요 스태프(연출, 촬영, 편집,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)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
-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

영화의 경우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(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로 인정하는 경우 1일 이상)된 영화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로서 (1)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

194)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 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

지원 내용

-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법인세(소득세)에서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

① 기본공제

- *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5% 세액공제
- *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% 세액공제
- * 일반기업의 경우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% 세액공제

② 추가공제

- * 촬영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 지출비율 80%이상인면서 아래 요건 중 3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 10%(중소기업의 경우 15%) 추가 세액공제

- 작가 및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인건비 비율이 80%이상
-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출연료 비율이 80% 이상
- 후반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이 80% 이상
- 복제권¹⁹⁵⁾, 공연권, 방송권, 전송권,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

-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¹⁹⁶⁾

〈제작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- 예시〉

- 국가등 특정단체로부터 출연금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
- 광고 또는 홍보비용
-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의 30%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
- 기존 세액공제 받은 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다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

유의사항

- 최저한세 적용대상
- 농어촌특별세 과세

절차 및 제출서류

-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, 공제세액계산서, 요건충족 확인서류 제출

195) 「저작권법」에 따른 복제권

196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표 제8의9에서 규정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

관련 법령
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5조의 6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 10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 9

용어 해설

- 영상제작자 :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
- 영상콘텐츠 : 방송프로그램으로 오락 방송프로그램, 교양방송프로그램중 다큐멘터리,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된 애니메이션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받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
- 방송프로그램 :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
- 오락 방송프로그램 :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
- 방송사업자 : 지상파방송사업자,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, 방송채널사용사업자,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
- 등급분류 :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¹⁹⁷⁾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¹⁹⁸⁾

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

Q. 질문 1

드라마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업체로서 외부제작사가 작가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콘텐츠 등에 대한 외주 제작비용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?

A. 세무사 답변

실질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가 작가, 주요 출연자 등과 직접 계약체결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으로 하며 외주제작사가 지급하는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197)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0조

198)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 2